

## 온라인 용자신청 따라하기

1 ... 근로복지서비스 접속(welfare.comwel.or.kr) ▶ 근로복지서비스 로그인 ▶ 성명, 주민등록번호 입력 ▶ 로그인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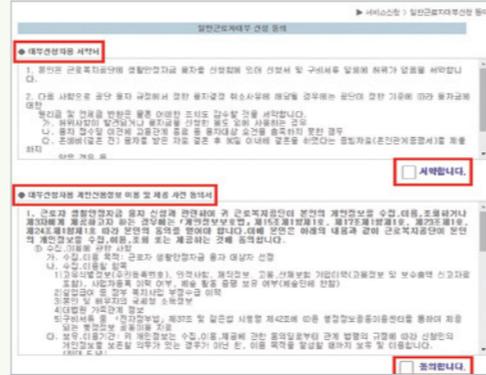
2 ... 로그인을 위한 인증서(공동인증서) 위치 선택 ▶ 인증서 암호 입력 ▶ 확인



3 ... 일반근로자대부신청 선택



4 ... 서약서 및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체크



5 ... 일반근로자 대부신청서 용자종류 작성(\*필수입력항목) ▶ 신청



6 ... 개인정보활용동의 ▶ 용자신청서 작성 ▶ 전송 클릭



##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안내

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휴양콘도를 법인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

### 대상자

주말	성수기	평일
모든 근로자 (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)	- 모든 근로자 -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- 워크샵, 체육행사,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, 부사장, 팀장, 동호회 회장 등	

\* 주말: 금, 토, 연휴 / 성수기: 별도공지 / 평일: 일~목(성수기 제외)

### 이용가능지역

설악, 경주, 해운대, 제주, 거제 등 전국 51개소

### 이용요금

56,000~243,000원(1박 기준-조식제외, 패밀리 Type)

\*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"무기명법인회원" 요금 참조

### 신청절차

- 근로복지서비스(welfare.comwel.or.kr)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의 "서비스 신청 ▶ 휴양콘도지원신청" 메뉴 클릭
- (공단)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→ (근로자) 확인 문자 전송
- 선정결과는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며 이용료는 객실 이용 후 직접 결제

### 문의사항

☎ 052-704-7333, 7331



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용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일체의 식사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.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습니다.

# 2022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안내



이 사업은 저소득 노동자 등 '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'를 실현하고자,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「복권위원회 복권기금」으로 조성 지원됩니다.

## 용자종류

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부모요양비, 자녀학자금, 자녀양육비

### 근로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

용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, 월평균소득이 280만원('22년 기준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/3) 이하일 것

- \* 일용근로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
- \*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·이직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

### 1인 자영업자

용자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, 월평균소득이 280만원 이하이며, 3개월 이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(신청 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)

\* 신청 월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

신청제한: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락자(연체·회생·파산·신용회복 등), 외국인, 재외동포

\* 기업은행(용자대행금융기관에 연체정보,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용자 제한이 있을 수 있음)

의료비

근로자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등으로 ①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②산후조리원 비용 ③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 
-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

혼례비

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 
- 혼인 신고일부터 1년 이내

장례비

①근로자 ②배우자 ③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
- 사망일부터 90일 이내

부모요양비

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모든 비용  
-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

자녀학자금

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
-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

자녀양육비

만 7세미만의 영·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 
-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

## 임금감소생계비

용자신청일 현재 ①소속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②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용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% 이상 감소하고 ③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96만원('22년 기준)이하인 근로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

-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

\*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용자대상 월평균소득 239만원('22년 기준) 적용

## 소액생계비

용자신청일 현재 ①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②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, 계절사업 등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용자대상 월소득이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%이상 감소하였으며 ③용자대상 월소득이 196만원('22년 기준)이하인 근로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

\*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용자대상 월소득 239만원('22년 기준) 적용

\*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

## 용자한도

\*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용자한도 총 2,000만원(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는 총 3,000만원 한도)

의료비	1,000만원(의료비 실제비용 내)
혼례비	1,250만원
장례비	1,000만원
부모요양비	1,000만원(피부양자 1인당 연 500만원)
자녀학자금	1,000만원(대상자녀 1인당 연 500만원) *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
자녀양육비	1,000만원(대상자녀 1인당 연 500만원)
임금감소생계비	1,000만원(감소임금 내)
소액생계비	200만원

\*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(마감) 용자와 별도 한도

## 용자조건

금리 연 1.5%(공단 신용보증료 연 0.9% 별도)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,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

일반	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
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	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
## 신청방법



온라인 신청

근로복지서비스  
(welfare.comwel.or.kr)



방문신청

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 
및 지사 경영복지부(전국 61개소)

## 사업기간

2022년 1월 1일(수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


## 구비서류

공통

- **정규직 근로자**
  -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(전년도 보수 총액자료로 월평균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)
  - 가족관계증명서(용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시 제출)
- **비정규직 근로자**
  - 근로계약서
  - 가족관계증명서(용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시 제출)
-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**
  -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
  - 사업자등록증
  - 소득금액증명원
  - 임대차계약서(필요시)

의료비	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비용 영수증(또는 청구서),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영수증, 요양 시설 이용비용 영수증
혼례비	혼인관계증명서
장례비	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
부모요양비	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
자녀학자금	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증명서
자녀양육비	가족관계증명서

임금감소생계비	- 소득감소사실 확인서(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) - 신청일 이전 6개월 급여명세서
소액생계비	- 소득감소사실 확인서(소액생계비 신청용) - 소득감소 직전월 급여명세서, 용자대상월(감소한 달) 급여명세서

\*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용자신청일 이전 3월분 임금대장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

\* 소득금액증명원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고,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임금대장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

문의·상담 복지사업 콜센터 1644-0083  
근로복지넷 [www.workdream.net](http://www.workdream.net)